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98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
 (뒤에 실음)

○副議長 崔鍾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무한경쟁시대와 IMF시대를 맞아 서울시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안을 의결하여 서울시의 비대한 조직을 혁신하는 의미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시정개혁을 통하여 시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서울特別市議會 臨時會 제2차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8時 58分 散會)

특별위원회 위원현황

| 윤 리 특 위 | 2002년월드 컵축구대회 지원특위 | 실업자대책 및고용창출 특 위 | 여 성 특 위 | 지방자치 특 위 |
|---------|--------------------------|-----------------------|---------|-------------|
| 10 | 10 | 10 | 9 | 10 |
| 이건상 | 김태운 | 김성태 | 양경숙 | 홍순철 |
| 오세근 | 김영준 | 장하운 | 송미화 | 최충민 |
| 김관길 | 이선재 | 김재실 | 이예자 | 김홍식 |
| 임호식 | 송태경 | 서홍선 | 김명수 | 김성환 |
| 김수복 | 김관수 | 나중문 | 이경애 | 김광수 |
| 노영석 | 김기덕 | 임동순 | 이해식 | 이동진 |
| 임원빈 | 박수환 | 임안순 | 차원갑 | 함태호 |
| 여정구 | 유기홍 | 주세만 | 이정은 | 하해진 |
| 황을수 | 김옥원 | 한춘자 | 이철호 | 오상준 |
| 장진국 | 이송죽 | 조상훈 | | 조성대 |

서울특별시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무원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를 제 4 조로 하고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 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서울특별시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특호다목을 적용한다.

②시장 이외의 시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 4 조(중전의 제3조) 제목 및 본문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국내여비지급”을 “여비지급”으로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영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16조제3항단서”를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로 하며, 동조제2호중 “영 제8조제3항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영 제16조제3항단서”를 “영 제17조 제1항 단서”로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영 제17조제1항 단서”를 “영 제18조제1항 단서”로 하며,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

제 4 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산업진흥대책위원회조례안